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24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초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6. 15.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 상대학생 ●●●(이하 '상대학생' 이라 한다), ◎◎◎, △△△, ▲▲▲, ▽▽▽(이하 '관련학생' 이라 한다)은 2019. 12. 4. 이 사건 당시 인천□□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인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는 2019. 12. 27. 청구인, 상대학생, 관련학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2019. 12. 4.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청구인 및 상대학생에게 각각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4시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조치 의결하였고, 2019. 12. 31. 청구인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행위는, 상대학생이 돈을 찾기 위해 허락 없이 청구인의 가방을 뒤지고 내용물을 훼손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가해행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먼저 상대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수동적, 방어적 행위였던 반면, 상대학생은 적극적, 목적 의식적으로 청구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청구인의 기물(가방 및 내용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상대학생을 단순 쌍방 폭력으로 판단하여 동등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학생확인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먼저 상대학생을 공격하고, 싸움의 원인인 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며, 다른 학생들이 말린 가운데 다시 공격하여 싸움을 유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정당방위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로 상호 간의 싸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상대학생과 동등한 조치가 나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치위원회는 고시에 따른 점수 판정에 있어 청구인이 먼저 공격을 했고, 상대학생이 방어를 하다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에서 청구인에게 2점, 상대학생에게는 1점을 주었고, 나머지는 같은 점수를 주었다.

청구인이 상대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으나, 모두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점수이므로, 청구인과 상대학생에게 동일한 조치 결정을 한 것이다. 청구인과 상대학생이 서로 싸운 것은 명백하고, 둘 사이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들이 객관적인 근거, 학생과 학부모들의 태도, 교육과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으로 과하지 않은 최소한의 조치이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2. 4. 하굣길에 인천□□초등학교 근처 공원에서 당시 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상대학생 및 관련학생들에게 학교 앞 놀이터 화단을 뛰어넘으면 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상대학생, ◎◎◎, ♤♤♤이 화단을 뛰어 넘는 것에 성공하였다며 청구인에게 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제대로 넘지 않았다며 만원을 주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상대학생 등에게 만원이 없다며 보라고 하자(가방을 뒤지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 관련학생 중 일부가 청구인의 가방을 거꾸로 들어 털었고, 상대학생은 청구인의 책가방 속에 있던 종이가방(쇼핑백)을 찢었다.

라. 상대학생은 청구인에게 ‘거지’ 또는 ‘사기꾼’이라고 말하였고(청구인은 ‘거지’라고 말했다고 주장, ‘상대학생’은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이에 청구인이 상대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상대학생의 배를 찼고, 상대학생도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청구인의 배를 찼다.

마. 청구인과 상대학생이 몸싸움을 하자, 관련학생 중 일부가 이들을 말렸고, ▽▽▽, ◎◎◎가 청구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서로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 목이 긁혔다. ◎◎◎는 청구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며 ◎◎◎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와도 싸움을 하였다.

바. 청구인, 상대학생, ◎◎◎가 싸우던 중 청구인이 넘어져 청구인의 종아리가 누군가의 발에 밟혔고, 상대학생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이 누군가의 발에 밟혀 부러졌다.

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신체적으로 싸운 학생들만 남으라고 하여 청구인, 상대학생, ◎◎◎가 남았고 서로 화해하였다. 다음날인 2019. 12. 5. 담임교사도 청구인과 상대학생, 관련학생들을 불러 서로 화해시켰다.

자. 그러나 청구인의 보호자가 2019. 12. 10.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2019. 12. 27.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1) 관련법규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먼저 상대학생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대학생이 종이가방(쇼핑백)을 찢고 '거지'라고 말하여 기물 훼손 및 인격적 모독을 당하였기에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상대학생이 청구인의 신체에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학생의 신체에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작은 법익(인격,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큰 법익(신체)에 대해 반격을 행사한 것으로 상당성을 결여하였고,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후 청구인의 상대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을 시작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방위임을 이유로 학교폭력(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1) 관련법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판정하여 합계 6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병과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학생, 보호자 각 4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의결하였다. 상대학생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대해 청구인과 달리 낮음(1점)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여 결국 청구인과 같은 조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상대학생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수동적, 방어적 행위이고, 반면 상대학생의 행위는 적극적, 목적의식 있는 폭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물(가방 및 내용물)을 고의로 훼손한 것이므로, 상대학생과 동등한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청구인이 상대학생 및 관련학생들에게 만원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들에게 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먼저 손으로 상대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상대학생의 배를 차는 등 상대학생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여 몸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상대학생의 가해행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종이가방(쇼핑백)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데 비해 상대학생은 몸싸움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졌는바, 청구인의 피해정도가 상대학생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일대 다수의 싸움으로 다수 학생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몸싸움과 관련된 학생은 청구인, 상대학생, ◎◎◎이고, ◎◎◎는 청구인과 상대학생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집단으로 공격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고,

청구인과 상대학생에게 동등한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다. 소결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